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378

제출연월일: 2022. 9. 2.

제 출 자: 대구광역시장

1. 개정이유

가.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와 「대구광역시 재정 보전금 배분에 관한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는 조례를 일원화하여 구·군 상호 간의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재원조정을 도모하고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안 제명)

-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 나. 특별조정교부금의 감액·반환 기준 신설(안 제11조제2항)
 -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교부, 민간 지원 보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미추진 및 용도변경 절차 위반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기준 명확화
- 다. 「대구광역시 재정보전금 배분에 관한 조례」폐지(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29조 등(※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2. 8. 1. ~ 8. 22.(21일간)
 - 나) 예고결과 : 의견 1건 제출, 결과요약서 붙임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
- 4) 갑질영향심사: 개선의견 3건 반영
 - ① 제7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제3항 관련 내용 중 "매우 불합리할 때"라는 용어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자의적 권한 행사가 우려되므로 구체적 내용이나 객관적 운영 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 필요
 - → "구 간 기준재정수요액산정의 형평이 필요한 때에는"으로 수정 하여 조치내용 반영
 - ② 제8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제2항 관련 내용 중 "매우 불합리할 때" 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자의적 권한 행사가 우려되므로 구체적 내용이나 객관적 운영 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 필요
 - → "기준재정수입액은 구 간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로 수정하여 조치내용 반영
 - ③ 제11조(부당교부금의 시정 등) 제1항 관련 내용 중 "명하거나"라는 용어는 권위적이고 지위의 강약을 내포하고 있어 순화된 용어로 변경 검토 필요
 - → "**반환하게 하거나"** 로 수정하여 조치내용 반영
- 5)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6)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 령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따라 자치구·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와 자치구·군 상호 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조정교부금"이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29 조의2에 따라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구·군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 2. "기준재정수요액"이란 각 구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 3.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각 구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 4. "측정항목"이란 각 구의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능별·성질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표준적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
- 5. "측정단위"란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의

단위를 말한다.

- 6. "단위비용"이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조정교부금의 종류) 조정교부금의 종류는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 정교부금으로 구분한다.
- 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구·군의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구의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른 시세 중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하는 보통세(다만, 영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소비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주민세 종업원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2.29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액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군의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1. 군에서 징수하는 시세(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 2. 시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시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 ④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5조(예산 계상) ① 시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시 예산에 계 상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시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제6조(조정교부금의 교부) ① 구·군의 일반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부한다.
 - 1. 구의 일반조정교부금은 매년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기준재정수 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구에 한정하여 그 미달액(이하 "재원 부족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 2. 군의 일반조정교부금은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교부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구의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이 구의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액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률에 따라 조정 교부한다.
 - ③ 시장은 「지방세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구 간 재정불균형이 현저히 발생할 경우 별도의 조정변수를 적용할 수 있다.
 - ④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부하다.
 - 1. 군의 일반조정교부금과 구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 2. 청사, 그 밖의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 3. 그 밖에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 4. 시정 역점시책 추진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 ⑤ 특별조정교부금은 매년 구·군의 예산편성 시 일괄적으로 교부하거나, 구청장·군수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심사한 후 교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 ⑥ 제4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은 그 사용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군수가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그 밖에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② 측정항목별 측정단위는 별표 1과 같고, 측정단위 수치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단위비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에 있어 실제적인 수요를 고려하지 않거나 획일적 적용 또는 물가상승으로 인하여구 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형평이 필요한 때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補正)할 수 있다.
- 제8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서 산정한 구세 수입액으로 하되,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 의 80에 상당하는 세율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재정수입액은 구 간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결정 통보) 시장은 매년 구·군의 예산편성 전까지 다음 연도에 교부해야 할 구·군의 일반조정교부금의 계상액을 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일반조정교부금 산정자료 제출 등) ① 시장은 매년 구청장·군수로 하여금 해당 구·군에 교부할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산정자료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현지조사 또는 확인할 수 있다.

- 제11조(부당교부금의 시정 등) ①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조정교부금의 산 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았거나 받으려 할 때에는 해당 구청장·군수가 정당하게 받을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교부할 특별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 1. 구청장·군수가 특별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자료를 과 장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았거나 받으려 할 때
 - 2.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한 경우
 - 3. 시장의 승인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 4. 예산 미확보 또는 법적·행정적 절차상 하자 등 구청장·군수의 귀책 사유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 5. 구청장·군수가 사업기간 연장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은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은 다른 구·군의 보전 재원으로 충당하거나 다음 연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가산할 수 있다.
- 제12조(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구청장·군수는 제9조에 따라 일반 조정교부금의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구·군의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재정진단) 시장은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군 에 대한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재정보전금 배분에 관한 조례는 폐지 한다.
- 제3조(조정교부금의 교부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대구광역시 재정보전금 배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교부결정된 일반조정교부 금과 일반재정보전금은 이 조례 제9조에 따라 교부결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제7조제2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표시단위
1. 일반행정비	①입법및선거관리비	기초의회 의원수	명
	②인건비	공무원수	명
	③일반관리비	공무원수	명
	④동행정비	통수	개
2. 공공질서 및 안전비	⑤안전관리비	민방위대원수	명
3. 교육비	⑥교육비	인구수	명
4. 문화 및 관광비	⑦문화체육비	인구수	명
5. 환경보호비	⑧환경보호비	가구수	가구
6. 사회복지비	9주민복지비	인구수	명
	⑩노인복지비	노인인구수	명
	①기초생활보장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명
	①보육지원비	영유아·청소년수	명
	③장애인복지비	장애인등록자수	명
7. 보건비	④보건위생비	인구수	명
8. 경제개발비	⑤지역경제비	임야및경지면적	ha
		사업체 종사자수	명
9. 수송및교통비	⑥도로관리비	도로면적	천 m²
		미개설도로면적	천 m²
	[[]교통관리비	자동차대수	대
10. 국토 및 지역개발비	⑧지역개발비	행정구역면적	천 m²
	⑨공원녹지비	공원면적	천 m²

[별표 2]

측정단위의 산정기준(제7조제2항 관련)

측 정 단 위	산 정 기 준	표시단위
1. 기초의회 의원수	「공직선거법」에 따른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명
2. 지방공무원수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자치구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수	명
3. 인구수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인구수	명
4. 가구수	「통계법」에 따라 발표된 최근 통계에 따른 자치구 의 가구수	가구
5. 통수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통수	개
6. 공원면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녹지 면적으로 자치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원면적	천 m²
7. 노인인구수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명
8.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해당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수급자수	명
9. 영유아ㆍ청소년수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인구수	명
10. 장애인등록자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그 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수	명
11. 임야면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자치구가 관리해야 할 임야면적	ha
12. 경지면적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에 해당되는 농지면적	ha
13. 사업체종사자수	「통계법」에 따라 공표되는 사업체종사자수	명
14. 미개설도로면적	「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해당 자치구가 관리해야 할 도로의 미개설도로 면적	천 m²
15. 도로면적	「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해당 자치구가 관리해야 할 도로의 면적	천 m²
16. 민방위대원수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 편성된 지역 민방위대원수	명
17. 자동차대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	대
18. 행정구역면적	「지방자치법」에 따른 해당 자치구의 관할구역의 면적	천 m²

관계 법 령

□ 지방재정법

-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시·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1.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 2. 해당 시·도(특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액(「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시·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해당 지방소비세액에서 제외한다)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36조(시·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 ①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조정교부금: 시·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는 등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
 - 2. 특별조정교부금: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을 추진하는 등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
 - ②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③ 일반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에는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군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시·군의 광역시세·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 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군의 재정

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 ④ 삭제
- ⑤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등 집행에 관한 사항과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광역시의 시세(市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

- 1. 특별시: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 2. 광역시: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같은 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및 같은 장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
- ②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본다.
- ③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의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와 「대구광역시 재정보전금 배분에 관한 조례」로 이원화 되어 있는 조례를 일원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이상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	내 용	조치결과
수성구청	 ○ 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제2항 중 - 조정교부금 교부 요율 상향 요구 (22.29% → 24.3%) ○ 제6조(조정교부금의 교부) ③ 시장은 지방세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구간 재정불균형이 현저히 발생할 경우별도의 조정변수를 적용할 수 있다 - 해당조항 삭제(조정변수 적용 삭제) ○ 제7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② 측정항목별 측정단위는 별표1과 같고 측정단위 수치의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으며 단위비용은 규칙으로 정한다"내용 중 - 별표1) 측정항목별 측정단위 변경 	 ○ 미반영 - 이번 조례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을명확히하고, 이원화되어 있는조례를일원화하는 것이 개정이유임 - 수성구청에서 의견을 제시한조정교부금 요율상향,조정변수삭제,측정항목별측정단위변경은타구·군의의견수렴과제도개선에 대한 장기적인검토가필요한사안으로이번개정에는 미반영함